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55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나경원
박성훈 · 김기현 · 김용태
김승수 · 김태규 · 김상훈
박형수 · 이상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어 선제적인 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지원 체계상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농가의 경우 적절한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4조제10항 단서 신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농업재해 위험도평가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 내의 농업재해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농업재해 예방·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도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0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 보조 및 지원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조 및 지

원의 기준·방법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u>제3조의3(농업재해 위험도평가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재해 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위험도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농업재해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 내의 농업재해 위험지역에 대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 로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농 업재해 예방·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위험도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u>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⑨ (생 략)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 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 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 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 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 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u><단서 신설></u> ⑪ (생 략)	<u>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u>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 ----- ----- ----- -----. <u>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6조에 따른 국고 보조 및 지원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방법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 동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u> ⑪ (현행과 같음)
--	---